

#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5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29일

발 의 자: 박춘선, 고광민, 곽향기,  
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 
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 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 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 
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 
남궁역, 남창진, 박 석,  
박영한, 서상열, 소영철,  
송경택, 신복자, 심미경,  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 
윤영희, 윤종복, 이경숙,  
이상욱, 이영실, 이종태,  
임춘대, 정준호, 최민규,  
최호정, 허 훈, 홍국표  
의원(4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춰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하고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 기관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우수한 환경교육 제공 및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 조성하며,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기후위기·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사회 실천 역량 강화 기반 마련하고자 함.
- 또한, 환경교육 정의 및 환경교육센터 명칭·역할 등을 환경교육법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법적 완결성·통일성을 보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함.

- 나. 시장·구청장·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3조)
- 다.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4조 ~ 제5조)
- 라. 환경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조)
- 마.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7조)
- 바.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8조)
- 사. 사업자 및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9조 ~ 제10조)
- 아.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1조 ~ 제12조)
- 자. 환경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3조 ~ 제14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교육”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·기능·태도·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2. “학교환경교육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·법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.
  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 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 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3. “사회환경교육”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자치구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 및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(이하 “환경교육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
2. 환경교육의 현황
3.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
4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5.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
6.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
7.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
8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, 구청장 등과 협의하고 「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교육분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확정 후 교육감,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환경교육계획의 시행)** ① 시장은 교육감, 구청장 등에게 환경교육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육감,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감, 구청장 등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·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**제6조(환경교육에 관한 자문)**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1.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
3.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환경교육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

**제7조(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)** 시장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

이집과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.

1. 환경교육
2.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
3.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
5.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
6.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
7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공공기관, 기업, 사회·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
2.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3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
4.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5.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
6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)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,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업자가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)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환경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제11조(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시행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,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.

제12조(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)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(이하 “환경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
3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(이하 “기초환경교육센터”라 한다)에 대한 지원
4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

- 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,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.

**제13조(환경교육의 위탁 등)**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와 기초환경교육센터에 환경교육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14조(재정지원 등)**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시행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」에 따라 행하여진 계획, 사업, 위탁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

[별지 제1호서식]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 <신설>

##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0일	
신청인	기관명	명칭 (법인[ ], 비법인[ ])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
	대표자	성명	생년월일		
	연락처	주소	(우편번호 : )		
		전화번호	전자우편		
	담당자	성명	연락처		
신청내용	기관설립 목적				
	전문인력 (상근) 인적사항	연번	성명	생년월일	담당업무

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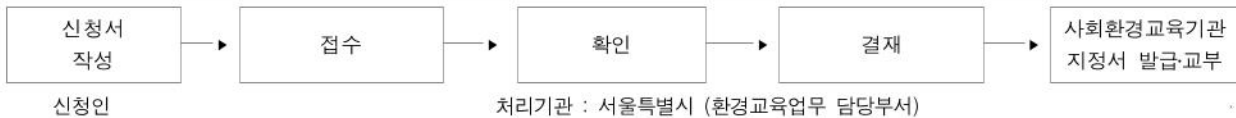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서울특별시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) 1부 2. 환경교육 전문인력(환경교육사 1인 포함) 인적사항 및 자격 서류 1부 3.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#### 처리절차



제 호

##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

- 기관명:
- 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:
- 대표자 성명:
- 기관 소재지:

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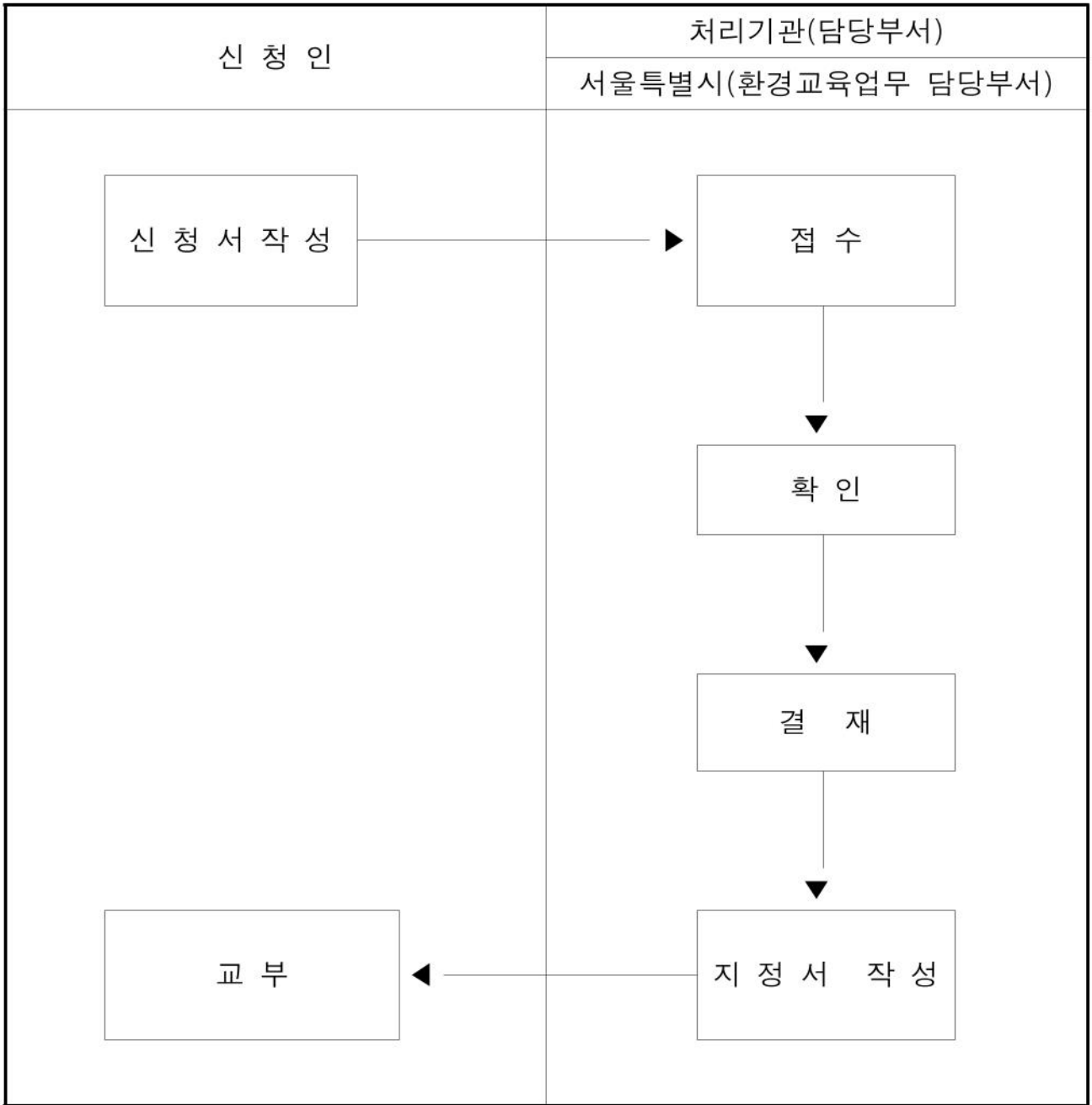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장

직인

<b>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</b>		처리기간
		30 일
신청인	①기관명(법인명)	②대표자
	③주소	(전화번호: ) (휴대전화: )
	④전자우편주소	
신청내역	⑤환경교육센터 명칭	⑥대표자
	⑦환경교육센터 소재지	(전화번호: )
	⑧개설 예정일	
<p>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서명 또는 인)</span></p> <p><b>서울특별시장</b> 귀하</p>		
<b>구비서류</b> 1. 사업계획서 1부 2.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 3.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.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·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		수수료 없음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

[별지 제4호서식]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서

지정번호	<b>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서</b>
제 호	
1. 기 관 명	
2. 대 표 자	
3. 소 재 지	
4. 지 정 기 간	
<p>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위 기관을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서울특별시장</b>      <b>직 인</b></p>	